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31 선고 2021가단315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2. 16.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소장에는 "2020. 2. 16.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행한다)를 12,847,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4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C은 피고의 장녀이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12,847,217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다. 피고는 2020. 4. 2.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C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77.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E, C은 F 각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1977년 당시 만 43세였던 반면, C은 1977년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없었던 점, 1970년대에는 지금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이 본인의 자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것은 1977년 당시는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유효한 점(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참조), 피고는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인 D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신탁관계의 해소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C이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목록, 1. 경상남도 사천시 G 대 294㎡, 2. 경상남도 사천시 G,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H, 시멘트 벽돌조 스테이지붕 단층주택, 9평 4홉 7작, 부속건물,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계사, 20평. 끝.